



화학섬유(Kevlar) 제조 방법 관련 영업비밀 침해 항소 심 사건

50

E.I. Dupont De Nemours Co. v. Kolon Industries, Inc., No. 12-1260, 4th Cir. Apr. 3(2014)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미국 연방 제4항소법원	사건번호	12-1260, 2070
판결 일자	2014. 4. 3.	판결 결과	과기환송
원고 (피항소인)	듀폰 (E.I. Dupont De Nemours & Company)		
피고 (항소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즈 (Kolon Industries, Inc) 등		
참조 법령	버지니아 주 영업비밀보호법 (Va. Code § 59.1-336 (2013)) 연방 증거법 (Federal Rule of Evidence) 등		
참조 판례	United States v. Kolon Indus., Inc., No: 3:12-CR-137 (E.D. Va.) Terra Firma Investments (GP) 2 Ltd. v. Citigroup Inc., 716 F.3d 296, 298 (2d Cir. 2013)		
영업비밀	화학 섬유 (케블라 Kevlar) 제조 방법 및 공정 관련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부정사용(misappropriation), 컨설턴트, 제조방법 편견방지신청(motion in limine) ¹⁾		

02 사건 개요

듀폰은 잘 알려진 화학회사로서 삼십년 이상 ‘케블라’라는 철사보다 5배나 강한 고강도의 파라아라미드 섬유를 제조하고 있다. 코오롱은 한국 법인으로서 수십 년간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를 제조하고 있다.

2006년 코오롱은 파라아라미드 제조기술을 향상시키고 헤라크론의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명의 전직 듀폰 직원들을 컨설턴트로 근무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외에도 다수의 전직 듀폰 직원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획득하였다.

1) 미국 소송법상 편견방지신청(motion in limine)이라 함은 어떤 증거나 정보를 배제하거나 포함시켜줄 것을 판사에게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의 편견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피 고
코오롱이 전직 직원(컨설턴트)을 이용해 영업 비밀을 침해(부정사용)하였다.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은 과거 소송 사건을 통해 공연히 알려진 것이다.
과거 소송 사건의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		과거 사건의 증거와 이 사건 듀폰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정보는 매우 유사하다.
법원의 기록에 있다고 해서 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아니다.		1심 판사는 과거 듀폰을 대리한 변호인이므로 사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04 판결 요지

코오롱으로 하여금 과거 사건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연방 법원의 공개 기록에 비밀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그 문서에 포함된 정보가 '공연히 알려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러한 증거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심 판사가 과거 사건에서 원고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의 파트너였다는 이유만으로 제척(기피)되지 않는다. 코오롱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근거로 뒤늦게 기피 신청을 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

05 Key Point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는 증거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코오롱은 과거 사건에서 듀폰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공지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전 (pre-trial) 절차 중의 하나인 '편견방지신청' (motion in limine) 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1심 판결에 패소하였다.

재판 전 청구의 하나로 어떤 증거가 배심원에게 지나친 편견을 초래하거나 절차를 부당하

게 지연할 위험이 클 경우, 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해당 증거의 제출을 금지하도록 명해줄 것을 신청(편견방지신청, motion in limine) 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